

#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0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안산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및 입장료·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현 안산시도시공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방법 및 위탁료, 입장료, 사용료 등이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 또는 사용료(주차료) 징수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현 조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하고 현실화된 위탁방법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방법(일반경쟁원칙)을 명확하게 정함 (안 제5조).
- 나. 비현실적인 공원입장료의 현실화함 (안 제10조 별표1).
- 다. 성호공원내 식물원 및 시민, 성호, 호수, 노적봉공원 주차장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별표2).
- 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을 현실화하고,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 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함 (안 제9조 내지 제12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도시공원법 제6조, 제14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10. 30 ~ 2003. 11. 18(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공원 및 시설의 관리위탁”을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 및 공원시설(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등의 특성 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관리위탁등의 기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등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를 “공원등의 위탁료등”으로 하고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공원등의 위탁료등) ①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매점, 식당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등의 위탁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위탁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이 결정하여 위탁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보조) 시장은 수입이 없는 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및 점용료”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중 “공원입장료”를 “공원입장료 및 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본문중 “효력을 정지,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축 필요한 처분을”을 “필요한 조치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2(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중 식물원 및 주차장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 지정고시한 날부터 정수한다.

#### 44(부록)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공원녹지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공원녹지과장 유 범 규
	담당·팀장 직위·성명	공원담당 조 주 형
	담당자 성명·전화	이 창 규 (행정 2414)

〈별표1〉

## 공원입장료(제10조 관련)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어른 1회당 500원 청소년 및 군인 300원 어린이 1회당 200원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 ○조직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

&lt;별표2&gt;

##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공 통	운동장 사 용	1회 1인	3.3㎡ 당10원	
	사진촬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00,000원	
	영화촬영	주간 1회	50,000원	영리목적 촬영에 한 함.
		야간 1회	100,000원	
	녹 화	1시간	10,000원	
		초과시간당	5,000원	
성호공원	유화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며 위탁관리자(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식물원	어른 1회당(500원), 청소년 1회당(300원), 어린이 1회당(100원)		
시민공원 성호공원 호수공원 노적봉 공원	주차장	배기량800cc미만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500원	-주차요금 징수시간 은 오전 09:00부터 공원 또는 공원시설 폐장시간까지로 한 다.
		배기량8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인이하 승합자동차	1,000원	-주차장이용안내 표지의 설치 및 위탁관리자의 자격,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 조례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주차장조례에 따른다.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승차정원16인이상 승합자동차	3,000원	
		최대적재량 1톤초과 화물자동차		

〈별표5〉

### 수수료(제21조 관련)

구 분	단위기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미만	3,000원	수수료는 안산시 수 입증지로 납부함.
	200㎡이상	5,000원	
	300㎡이상	10,000원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어린이 : <u>국민학교</u>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p> <p>4.~10. (생략)</p>	<p>제3조 (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초등학교</u> .....</p> <p>.....</p> <p>4.~10. (현행과 같음)</p>
<p>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p>제5조 (공원 및 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 및 공원시설(이하 “공원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원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등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부채납)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57조의 9를 준용한다.</p>	<p>&lt;삭제&gt;</p>
<p>제9조 (관리위탁등의 기간) ①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공원점용, 사용허기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다.          ②기부 채납된 공원시설의 기부자에 대한 시설 관리허가 기간도 제1항과 같다.          ③위탁 및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만료 후 계속 관리 및 점용, 사용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9조 (관리위탁등의 기간)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등을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 제6조 제2항 및 이 조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p>	<p>제12조 (공원등의 위탁료등) ①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매점, 식당등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등의 위탁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②위탁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이 결정하며 위탁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u>&lt;신설&gt;</u></p> <p>제14조 (공원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공원의 입장료는 입장시,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사용시 <u>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u> 각각 이를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이미 납부된 입장료, 사용료 및 점용료 및 관리 위탁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여 이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12조의2 (보조) 시장은 수입이 없는 공원등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14조 (공원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p> <p>..... <u>&lt;삭제&gt;</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lt;삭제&gt;</u>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14조 (공원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p> <p>.....</p>
<p>제15조 (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u>공원입장료</u>를 면제한다.</p> <p>1. ~ 6.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영구보존 사적 또는 현적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p> <p>2. 민족적 의식 및 종교의식 등 이와 유사한 행사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p> <p>3. 기부채납된 시설물</p> <p>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5조 (요금의 감면) ① .....</p> <p>..... <u>공원입장료 및 사용료</u> .....</p> <p>1. ~ 6.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u>효력을 정지</u>, <u>공작물의 변경</u>, <u>개축</u>, <u>이축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제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u></li> <li>3.~4. (생략)</li> </ol>	<p>제16조 (허가취소 등) .....  .....  .....필요한 조치를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u></li> <li>3.~4. (현행과 같음)</li> </ol>
<p>제17조 (사용등 폐지신고) 공원의 사용 및 점용자가 사용 및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lt;별표1&gt;</p> <p>공원입장료(제10조관련)</p>		<p>&lt;별표1&gt;</p> <p>공원입장료(제10조관련)</p>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u>어른1회당 100원</u> <u>청소년 및 군인 60원</u> <u>어린이 1회당 4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조직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li> </ul>
일반공원	<u>어른1회당 500원</u> <u>청소년 및 군인 300원</u> <u>어린이 1회당 20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조직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li> </ul>

현 행				개 정 안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별표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11조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별</th><th>사 용 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운동장 사 용</td><td>1회 1인</td><td>평당 10원</td><td>경합자가 있 을 때에는 일</td></tr> <tr> <td>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td><td></td><td>100,000원</td><td>반공개 입장에 의함.</td></tr> <tr> <td>영화촬영</td><td>주간1회 야간1회</td><td>50,000원 100,000원</td><td></td></tr> <tr> <td>녹 화</td><td>1시간</td><td>10,000원</td><td>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td></tr> <tr> <td>유회시설 및 운동시설</td><td></td><td>인근시설 사용료 의 90%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td><td></td></tr> </tbody> </table>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 용	1회 1인	평당 10원	경합자가 있 을 때에는 일	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		100,000원	반공개 입장에 의함.	영화촬영	주간1회 야간1회	50,000원 100,000원		녹 화	1시간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유회시설 및 운동시설		인근시설 사용료 의 90%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별</th><th>사 용 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운동장 사 용</td><td>1회 1인</td><td>3.3㎡당 10원</td><td></td></tr> <tr> <td>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td><td>1인1년당</td><td>100,000원</td><td></td></tr> <tr> <td>영화촬영</td><td>주간1회 야간1회</td><td>50,000원 100,000원</td><td>영리목적 촬영</td></tr> <tr> <td>녹 화</td><td>1시간, 초과시간당</td><td>10,000원 5,000원</td><td>에 한함.</td></tr> <tr> <td>유회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td><td></td><td></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며 위탁관리자(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ul> </td></tr> <tr> <td>설호 공원</td><td>식물원</td><td>어른 1회당(500원), 청소년 1회당 (300원), 어린이 1회당(100원)</td><td></td><td></td></tr> <tr> <td rowspan="10">시민 공원</td><td rowspan="10">주차장</td><td>배 기 량 800cc미만 승용, 승 합, 화물 자동차</td><td>500원</td><td>- 주차요금 징 수시간은 오전 09:00부터 공원 또는 공원시설 체장 시간 까지 로 한다.</td></tr> <tr> <td>배 기 량 8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 인이하 승 합자동차</td><td>1,000원</td><td>- 주차장 이용안 내 표지의 설치 및 위탁관리자 의 자격, 주차 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 조례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다.</td></tr> <tr> <td>최 대 적 재 량 1톤이 하 화물 자동차</td><td></td><td></td></tr> <tr> <td>승차정원16 인 이 삼 승 합자동차</td><td>3,000원</td><td></td></tr> <tr> <td>최 대 적 재 량 1톤초 과 화물 자동차</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r> <td></td><td></td><td></td></tr> </tbody> </table>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 용	1회 1인	3.3㎡당 10원		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	1인1년당	100,000원		영화촬영	주간1회 야간1회	50,000원 100,000원	영리목적 촬영	녹 화	1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에 한함.	유회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며 위탁관리자(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ul>	설호 공원	식물원	어른 1회당(500원), 청소년 1회당 (300원), 어린이 1회당(100원)			시민 공원	주차장	배 기 량 800cc미만 승용, 승 합, 화물 자동차	500원	- 주차요금 징 수시간은 오전 09:00부터 공원 또는 공원시설 체장 시간 까지 로 한다.	배 기 량 8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 인이하 승 합자동차	1,000원	- 주차장 이용안 내 표지의 설치 및 위탁관리자 의 자격, 주차 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 조례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다.	최 대 적 재 량 1톤이 하 화물 자동차			승차정원16 인 이 삼 승 합자동차	3,000원		최 대 적 재 량 1톤초 과 화물 자동차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 용	1회 1인	평당 10원	경합자가 있 을 때에는 일																																																																																						
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		100,000원	반공개 입장에 의함.																																																																																						
영화촬영	주간1회 야간1회	50,000원 100,000원																																																																																							
녹 화	1시간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유회시설 및 운동시설		인근시설 사용료 의 90%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함.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운동장 사 용	1회 1인	3.3㎡당 10원																																																																																							
사진촬영 (상시영리 행위)	1인1년당	100,000원																																																																																							
영화촬영	주간1회 야간1회	50,000원 100,000원	영리목적 촬영																																																																																						
녹 화	1시간, 초과시간당	10,000원 5,000원	에 한함.																																																																																						
유회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정하며 위탁관리자(법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행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li> <li>- 시장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li> </ul>																																																																																						
설호 공원	식물원	어른 1회당(500원), 청소년 1회당 (300원), 어린이 1회당(100원)																																																																																							
시민 공원	주차장	배 기 량 800cc미만 승용, 승 합, 화물 자동차	500원	- 주차요금 징 수시간은 오전 09:00부터 공원 또는 공원시설 체장 시간 까지 로 한다.																																																																																					
		배 기 량 800cc이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15 인이하 승 합자동차	1,000원	- 주차장 이용안 내 표지의 설치 및 위탁관리자 의 자격, 주차 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동 조례에도 불구하고 안산 시 주차장 조례 에 따른다.																																																																																					
		최 대 적 재 량 1톤이 하 화물 자동차																																																																																							
		승차정원16 인 이 삼 승 합자동차	3,000원																																																																																						
		최 대 적 재 량 1톤초 과 화물 자동차																																																																																							

현 행	개 정 안																				
<별표3>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삭제>																				
<p>&lt;별표5&gt;</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수 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단 위 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허가 및 위탁신청</td><td>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td><td>3,000원 5,000원 10,000원</td><td>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td></tr> <tr> <td>점용허가 신청</td><td></td><td>5,000원</td><td></td></tr> </tbody> </table>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	3,000원 5,000원 10,000원	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	점용허가 신청		5,000원		<p>&lt;별표5&gt;</p> <p style="text-align: center;">수 수 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단 위 기 준</th><th>금 액</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허가 및 위탁신청</td><td>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td><td>3,000원 5,000원 10,000원</td><td>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td></tr> </tbody> </table> <p>&lt;삭제&gt;</p>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	3,000원 5,000원 10,000원	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	3,000원 5,000원 10,000원	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																		
점용허가 신청		5,000원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200m'미만 200m'이상 300m'이상	3,000원 5,000원 10,000원	수수료는 안산시 수입증지로 납부 함.																		

#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190
----------	------

제안년월일 : 2003. 12. 6.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회

## 1. 수 정 이 유

- 일반공원 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은 공원시설 이용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입장료가 현실성이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안 제10조 관련 별표1의 공원입장료 중 일반공원의 사용 기준을 하향 조정함.

##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 중 일반공원의 사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기준
어른 1회당 100원
청소년 및 군인 60원
어린이 1회당 40원

# 신 구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별표1〉</p> <p>공원입장료(제10조 관련)</p>		<p>〈별표1〉</p> <p>공원입장료(제1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별</th><th>사 용 기 준</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공원</td><td> <u>어른1회당 500원</u>  <u>청소년 및 군인 300원</u>  <u>어린이 1회당 200원</u>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td></tr> </tbody> </table>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u>어른1회당 500원</u> <u>청소년 및 군인 300원</u> <u>어린이 1회당 20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별</th><th>사 용 기 준</th><th>비 고</th></tr> </thead> <tbody> <tr> <td>일반공원</td><td> <u>어른1회당 100원</u>  <u>청소년 및 군인 60원</u>  <u>어린이 1회당 40원</u>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td></tr> </tbody> </table>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u>어른1회당 100원</u> <u>청소년 및 군인 60원</u> <u>어린이 1회당 4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u>어른1회당 500원</u> <u>청소년 및 군인 300원</u> <u>어린이 1회당 20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종 별	사 용 기 준	비 고												
일반공원	<u>어른1회당 100원</u> <u>청소년 및 군인 60원</u> <u>어린이 1회당 40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는 기본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시장이 인하조정할 수 있다.</li> <li>○ 조직단체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정수함.</li> </ul>												